



보도 일시	(지 면) 1. 3.(화) 석간 (인터넷) 1. 3.(화) 06:00	-
-------	---	---

담당 부서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배석희	(044-204-7820)
		담당자	사무관	하유경	(044-204-7867)
			사무관	김진중	(044-204-7881)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법적 기반 마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공포 -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모형(모델) 확산 등의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를 규정
- 소상공인 개방형 빅자료(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조문 신설... 자료(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신사업 창출 생태계 조성 박차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지난 '22.12.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급격한 소비환경 비대면·온라인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은 자금여력·정보격차 등의 이유로 디지털 전환이 어려워 정부가 소상공인이 디지털 전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개정된 소상공인법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법률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전담조직 지정,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 설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법에는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은 국세청·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민간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합하고 소상공인에 특화된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창업부터 성장, 도약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경영환경 분석, 영업대응 전략 등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소상공인과 기존 소상공인에게 준비된 창업 및 경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에게는 신규 사업(비즈니스) 모형(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영 장관은 “오늘 공포된 소상공인법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대통령령을 개정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이 온라인·비대면으로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견인하고, 자료(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정 법률
<p><신 설></p>	<p>제3장의2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촉진</p>
<p><신 설></p>	<p>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신 설></p>	<p>제15조의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전담조직의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15조의4(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의 설치)</p> <p>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현행	개정법률
<p><신설></p>	<p>3. 그 밖에 디지털 전환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p> <p>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7항(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p> <p>제15조의5(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p>② 중소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현 행	개 정 법 률
	<p>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p> <p>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p> <p>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p> <p>다. 개업일·휴업일 및 폐업일</p> <p>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p> <p>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법인·단체·민간기업체의 장</p> <p>4. 그 밖에 지역별 인가·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p>

현행	개정법률
<p><신설></p>	<p>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p> <p>③ 플랫폼의 구축·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5조의6(데이터등의 활용 및 보호 원칙) ①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④ 데이터등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p>

현행	개정법률
<p data-bbox="181 913 328 949"><신설></p> <p data-bbox="169 1666 783 1702">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p> <p data-bbox="197 1722 464 1758">① ~ ④ (생략)</p> <p data-bbox="197 1778 754 1814">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p> <p data-bbox="197 1834 448 1870">1. ~ 3. (생략)</p> <p data-bbox="197 1890 783 1984">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u>데이터베이스</u> 구축·운영</p>	<p data-bbox="842 282 1430 600">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서비스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 data-bbox="842 620 1430 889">⑤ 중소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p> <p data-bbox="813 909 1430 1236">제15조의7(플랫폼 활용 촉진)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data-bbox="842 1256 1430 1525" style="list-style-type: none"> 1. 데이터 공유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p data-bbox="842 1545 1430 1639">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data-bbox="813 1659 1430 1695">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p> <p data-bbox="842 1715 1190 1751">① ~ ④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42 1771 1342 1807">⑤ -----.</p> <p data-bbox="842 1827 1174 1863">1. ~ 3.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42 1883 1430 1977">4. -----<u>플랫폼, 상권 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u>-----</p>

현행	개정법률
<p>5. ~ 13. (생략) <u><신설></u></p> <p>14. (생략)</p> <p>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1. ~ 6. (생략) <u><신설></u></p> <p>7. ~ 23. (생략)</p> <p>② ~ ④ (생략)</p>	<p>5. ~ 13. (현행과 같음) <u>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u></p> <p>14. (현행과 같음)</p> <p>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 -----.</p> <p>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u></p> <p>7. ~ 23.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